

국내 화재보험 요율제도와 전망



김영욱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산장1부장)

화재보험요율의
점진적이고도 합리적인
체계개선은 보험자와
계약자의 호혜원칙에
입각한 수준에서
견지되어야 하며
국민경제 및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요율이란?

화재보험료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가격이며 화재보험요율이란 일정한 보험단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험가격을 말하고 보험요율산정이란 이 보험단위당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화재보험을 일반상품과 비유하여 생각하여 보면 화재보험요율이란 화재보험이란 상품의 단가로 보면 좋을 듯하다.

즉, 화재보험요율이란 화재보험단위에 부과하는 보험가격을 말하고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인 백분율 혹은 천분율로 표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산출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되는 화재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사무관리, 보험상품판매, 손해예방등과 같은 사업비를 지변하며 비상위험준비금 및 이익을 보장하는 제반 기능을 수행한다.

화재보험요율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체결시 당해 보험의 목적을 인수함에 있어 그 위험도를 측정,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자유요율과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표준적인 요율을 사용하게 하거나 적용보험요율수준에 관한 준칙을 적용하도록 권고요율 및 보험자간의 경쟁적 영업활동을 지양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등을 위하여 보험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하는 협정요율등의 세가지를 말한다.

위의 세가지 보험요율은 그 나름대로 각기 장단점을 지니는 것으로 어떤 보험요율형태가 우수하다고 하기에는 곤

관하고 각국의 국민대중의 보험에 대한 인식도와 위험도에 관한 평가, 정치경제적인 여건등에 의하여 경제사적인 발전과정을 통한 형성과정이기도 이론적인 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구미 각국과 일본의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F.O.C(FIRE OFFICES' COMMITTEE)가 그 회원사를 위하여 협정요율과 관계규정을 제정하고 기타 비회원사는 자체에서 보험요율을 산정적용하는 것이 전통적이었으나 점진적으로 자유요율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사전감독은 없으며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및 의회의 조사가 필요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각주의 보험법이 상이한 관계로 산정제도도 주세정요율제, 요율산정단체제정요율제, 사전인가제, 수정사전인가제, 제출후사용제, 사용후제출제, 제출불요제등의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며 미국전역에 걸쳐 권고요율제정을 하는 I. S. O(INSURANCE SERVICES OFFICES)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각주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특별법인 손해보험요율산정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회에서 관계당국의 인가를 받아 동단체의 회원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산정회요율과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각 보험사업자가 관계당국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는 업법인가요율의 두가지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정부당국의 사전인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보험요율형태는 각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인 이론상에서 가격결정이론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즉, 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적정성

보험료는 충분하고도 지나치게 높아서 안된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보험료가 불충분하면 보험자의 지급불능을 초래하여 다수의 계약자에게 그 피해가 미치고 한편 지나치게 높으면 계약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실제손해율과 예정손해율의 괴리현상을 빚게되므로 이의 접근치를 현실적으로 유도시켜야 된다는 뜻이다.

② 공평성

현실적으로 비슷한 위험의 다수의 동일위험집단에 속하는 계약자에게는 보험료부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둘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에 있어서 공장물건의 손해율이 높음으로 인하여 화재보험전체의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하여 주택물건요율까지 획일적으로 인상한다면 이는 공평성을 잃은 요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③ 경제성

보험자는 계약자의 소득이나 예산의 범주내에서 판매가 격인 보험료를 책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증권상의 담보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보상한도액이나 기초공제액을 조정설정함으로써 보험료부담의 신축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④ 예방성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사고예방능력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시설에 대한 할인, 무사고계약자에 대한 할인 혹은 환급제, 위험품에 대한 할증제등의 방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같은 기본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화재보험요율은 일반화재통계 및 보험통계에서 이루어지는 통계원가방법, 경험원가방법 및 이론원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통례인 바 필요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을 혼용하여서 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손해액이나 사업비등이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험사업의 안전성이나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이를 조정하여서 예정손해율과 실제손해율을 접근시킴은 물론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을 접근시키는 검증제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요율제도

우리나라 화재보험요율은 1946년 3월 당시 미군정청에서 협정요율로 인가를 얻어 실시된 이래 수차에 걸친 체계개편과 요율수준의 조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행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요율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위험에 속하는 위험집단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위험에 대한 분류적 체계로서 영문증권사용계약을 제외하고는 협정인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물건별 분류

모든 부보대상물건을 용도에 따라 주택, 일반, 창고, 공장등의 4개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물건마다 별개의 기본요율, 주택, 일반및 창고물건은 건물구조급별요율과 전국등지별표와 할증 및 할인요율로 되어있고 공장물건에 대하여는 업종별, 공정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② 건물의 급별분류

건물에는 내화도의 강약, 가연성의 강약등을 구분하여 건물구조를 4 개등급으로 분류하여 요율상의 차등을 두고 있다.

③ 전국등지별표(지구율)

발화빈도, 연소력, 소방력등에 의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화재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화재보험요율 적용대상지역인 전국을 4 개등지로 분류하고 각 등지간에 요율의 차등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공장물건은 제외시키고 있는 바 공장구내에서의 발화빈도는 지역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④ 할증, 할인요율

부보물건의 구조, 용도, 성질, 주위환경 및 특별한 설비의 유무에 따라 기본요율을 적용하는 물건보다 위험이 큰 물건에 대하여는 할증, 위험이 적거나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설비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할인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요율의 공평성을 기하고 있다. 즉, 할증요율에는 지붕할증, 건축할증, 위험품할증, 동산할증, 고층건물할증등이 그 예이며 할인요율에는 소화설비할인, 방화문할인, 공지할인등이 그 예인 것이다.

⑤ 특정물건요율

물건의 성격상 노적의 동산, 석탄, 옥외설비 및 장치, 기차, 전차, 동차등의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별개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는 수용건물이 없거나 혹은 필요치 않거나 지구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특정물건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이 현행 화재보험요율서의 주요 골격인 바, 이외에 기본적인 것으로 통칙, 건물에 관한 규정, 위험품에 관한 규정, 소화설비에 관한 규정이 제반물건의 부보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협정요율은 현재의 제도로써는 영문증권을 사용시 적용하는 구두요율과 실질적인 보험요율의 이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3. 화재보험요율 체계개선 방향 및 전망

1960년대에 진입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험산업도 급격한 양적 팽창이 병행되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양적인 성장을 밑받침할 수 있는 기술축적이 미흡하였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요율체계를 확립하는데 제반사정에 인한 장애등으로 계약의 인수 및 관

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화재보험 요율체계는 상당히 진보적으로 개정된 것은 사실이다. 화재보험의 요율체계중 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에 관한 규정, 전국의 지역등지구분, 공업 및 작업공정에 따른 요율체계 등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현실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수차에 걸친 조정에도 불구하고 제반여건의 변화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우리의 요율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우선 현재의 화재보험 요율체계의 복잡난이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보험자나 계약자 모두 통감하는 것으로서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면서도 공정정확성을 잃지않는 요율체계가 아쉬운 실정인 것이다. 현행 화재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으로서

① 과학적 요율조정방법의 도입

② 요율제도의 탄력적운영

③ 상품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확립

④ 건물규정, 등지구분, 산업분류등의 재정비

⑤ 국·영문약관상의 요율체계 이원화문제

⑥ 할인·할증제도의 현실화등으로 생각되는 바

보험요율의 객관적, 합리적, 타당성 및 공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1983년12월에 보험사업자의 자생적인 단체로 설립된 한국순해보험요율산정회의 창설과 더불어 이러한 모든 점이 부합될 수 있는 체계개선작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이는 이 단체의 정관상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화재보험의 요율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조정된 내용은 그 장단점의 파악이 수년동안의 시행이 있어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안을 확정하기까지는 더욱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고 분야별로 전문가 및 계약자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여야 될 줄 믿는다.

따라서 화재보험요율의 점진적이고도 합리적인 체계개선은 보험자와 계약자의 호혜원칙에 입각한 수준에서 견지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경제 및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화재보험요율체계의 개선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험업계, 계약자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이 미래를 향한 좋은 결실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